



# 환 · 경 · 관 · 련 · 질 · 의 · 응 · 답

## 유독물 수입신고 관련

Q

저희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입유독물 중 한가지 품목의 제품표기명이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동일 제품으로써 물질의 종류, 함량, 제조자등 모두 동일)  
이에 대하여 향후 수입실적보고시 수입량을 합산하여 보고하면 되겠는지요?

A

수입하는 유독물의 제품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별도로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실적 보고 시 각각의 제품명에 따라 유독물 수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에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른 유독물 수입변경신고 대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폐기물배출자 신고에 대하여

Q

당 현장은 산업단지로서 단지 내 4개소 발생 사업장폐기물을 단지 내 설치승인 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에 자가 매립하고 있던 중 매립장 부지 활용 계획(타 용도 사용)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기 매립된 폐기물은 단지 외부의 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의 운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기술관리대행업체를 통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경우, 기 매립된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외부 위탁처리시 기술관리대행 업체(매립장 위탁관리 업체)에서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술관리대행자는 동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대행자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적정처리여부

Q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서 처리가 불가하다고 숙지하고 있습니다.  
질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파지 및 사

무실일반쓰레기)를 배출자 임의대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아닌 사업장배출시 설계폐기물 가연성으로 분류하여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서 일괄위탁처리의 적법 여부?

A

동일사업장에서 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하고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한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도 함께 운반할 수 있습니다.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의 방지시설일지 작성자 요건

Q

방지시설일지 작성관련 사업장내 지정되어 있는 환경기술인이 방지시설일지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폐수리업종사 경력 5년이상된 분이라면 가능한지요?

질문) 방지시설일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제3호에 따라 방지시설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은 환경기술인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환경기술인 외의 자가 운영일지를 작성하더라도 환경기술인의 책임하에 관리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여과집진시설의 범위

Q

대기환경보전법 규칙별표 <별표4>에서 규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질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별표4 5항>. 여과집진시설이 반드시 bag filter 집진시설만을 규정하는 것인지요?

질의 2) <별표4의 15항>. 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이라 함은 어떠한 기관에서 그 성능 및 효율에 관한 검사를 통과한 시설이라는 것인지요?

질의 3) 만약 간이식 여과집진시설(이미 완제품으로 시중에 판매 중인 소형 여과집진기)을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여과집진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형 여과집진기의 사양서상 성능은 풍량 : 12m<sup>3</sup>/분 x 120mmAq x 1HP, 여과포재질 P.E FILTER x 1EA, 집진효율은 95% 이상입니다.

A

질의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의 제5호 여과집진시설이란 “함진배가스를 여과재에 통과시켜 입자를 관성충돌, 직접차단, 확산 등에 의해 분리·포집하는 고효율 집진장치”로 일반적으로 백 필터(Bag filter)라고 하나, Bag filter만을 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 2) 동 별표4의 제15호와 관련하여 여과집진시설에 대한 별도의 설치기준 및 승인기준에 대해



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질의 3) 참고로, 간이식 여과집진시설의 구조, 용도 등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는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배출유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처리효율, 설치부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시료채취밀도

Q

토양정밀조사지침(환경부고시 제2001-186호) 제1장 총칙의 2.적용범위 '나' 항에서 「토양정밀조사는 본 지침을 따르되 조사대상지역의 오염상황, 오염면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상지역, 대상시료의 선정 및 시료채취 밀도 등을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조정할 수 있다.」에서 시료채취 밀도를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더하거나 또는 뺄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요?

A

토양정밀조사지침에서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조사대상지역의 오염상황, 오염면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상지역, 대상시료의 선정 및 시료채취 밀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정이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토양관련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수 등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유해성 심사의 주체

Q

신규화학물질의 수입, 제조시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외국에서 신규화학물질을 유통업체가 수입하여 당사로 입고되어 사용할 경우 유해성심사의 주체가 유통업체인지, 사용업체인지요?

질의2) 현재 유해성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물질을 수입, 제조할 경우 유해성심사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유해성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물질을 인터넷상으로 알 수가 있는지요?

질의3) 유해성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수입, 제조가 가능한지요?

A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신청의 주체는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유해성심사가 진행 중인 물질에 대해서는 최초 신청자에 대한 소유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 게재를 하지 않으며, 동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고시하여야 하므로 고시되기 전까지는 신규화학물질에 해당됩니다. 동법

제12조에 의한 유해성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이후에만 수입·제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증변경(유독물)

Q

당사는 2개의 공장과 1개의 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월부터 본사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하고 모든 등록증을 폐쇄할 예정입니다.(즉, 사업자등록증 통합) 공장의 경우 "유독물영업신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

사업자등록증이 바뀌었으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에 해당되므로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양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갈탄난로 관련

Q

건설현장 특성상 동절기때 양생목적으로 갈탄을 사용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및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제8조'에 해당여부가 불명확하여 문의를 합니다.

질의1) 기존 질의회신(벽난로 설치에 관하여, 양원석님, 2007.10.28)에는 상기 법에 적용대상시설은 동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이라는 답변은 있으나, 법 조항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별도로 있는지 여부?

질의2) 만약 상기 질문에 대기배출시설에만 적용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별표3의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의해 건설현장 갈탄난로(시멘트 양생을 위한 건조시설)가 어떤 시설 이상일 경우,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 또한 여러 대의 갈탄난로를 사용할 경우(사용 개수는 현장 여건마다 일정하지 않음), 대기배출시설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현재 관할지자체마다 상기 법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제8조 등에서 고체연료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에 있는 사업자에게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고시 제2조제5호에서 "사업자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3의2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대기오염배출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으며, 동 별표의 공통시설중 기타로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자동차수리업,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폐수처리업의 시설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